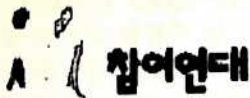


■ 대검찰청, 정보공개소송 중인 문서 파기지시 사건(2000.5)

- 참여연대 보도자료; 대검찰청 정보공개소송 중인 문서 조직적인 파기 지시 (2000.5)
 - 검찰의 공안사범(음영천 씨) 동향파악 지침 파기 사건 진행 개요
 - 정보공개청구서(음영천)
 - 서울지방검찰청 비공개 결정 통지서
 - 원고 : 음영천 / 피고 :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99구212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정보공개청구 목록
 -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 항소이유서(원고 : 음영천 / 피고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 준비서면
 -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서울지방경찰청, 종암경찰서)
 - 징계청원서

- 참여연대 진상조사 요청서; 검찰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증거문서 파기 진상조사 요청(2000.5)

- 인권하루소식 1999년 4월 2일 1340호 불법사찰, 알고 보니 검찰이 배후
1999년 6월 12일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
지수
2000년 5월 3일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
송 진행 중 문서 파기



참여연대 공판대표: 김광배 박상준 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인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전화 PSPD, 내부: 참여연대 / 한미민나루누리 go PSPD / 전자우편: 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박원석 시민권리부장, 이정미 간사 : 723-5303 right@pspd.org)
제 목 검찰의 정보공개 소송중인 문서 파기에 대한 기자회견
날 짜 2000. 5. 2. (총 3 쪽)

보 도 자 료

대검찰청, 정보공개소송 중인 문서 조직적 파기 지시 참여연대, 검찰의 민간인 사찰정보 은폐 의혹 제기

일시 및 장소: 2000. 5. 2 오전 10시 대검찰청 기자회견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金七準 변호사)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崔銀純 변호사)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공개 소송중인 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게 대한 징계와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2.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 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났다.
3. 이에 앞서 '99년 7월 참여연대는 음영천씨를 대리하여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의 내용, (음영천씨의) 동향파악 카드, 동향파악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1월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바있다.
4. 검찰측은 1심 패소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변론의 요지와는 달리 '99년 9월 10일자로 동향파악지침을 폐지, 파기 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지난 4월 25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이 같은 문서의 파기가 대검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 폐지시달 공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안사범 (음영천씨) 동향파악 지침 파기 사건 진행 개요

-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음영천씨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음영천씨에 대해 주소지 관할 검찰서는 2달에 1번 꼴로 동향파악을 하여 검찰에 보고해 올. 이같은 동향파악행위는 1998년까지 계속됨.
- 1999. 2. 지난 10년간의 동향파악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1999. 3. 국가배상청구사건 기각 결정(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
• 기각 결정서를 통해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한 동향파악 사실 확인
- 1999. 4. 1 참여연대 진상조사 촉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대검 공안부 당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동향파악 지침 및 동향파악 사실 시인
- 1999. 4. 16 서울지검에 동향파악 지침의 내용,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숫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1999. 4. 24 서울지검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대외비 문서
 - 공개될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 범죄예방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 비공개 사유 제시
- 1999. 6. 11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승소(위자료 200만원 지급판결)
- 1999. 7. 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제기(서울행정법원)
- 2000.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 "비공개 대상정보 아니다"는 판결
- 2000. 3. 18 검찰측 항소이유서를 통해 동향파악 지침 폐지 및 파기 언급
- 2000. 4. 25 검찰측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의 '공안사범 사후관리지침 폐지 시달 공문'에 의한 동향파악 지침 파기 확인

정 호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과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음 영 천	주민등록(여권·외국인 등록) 번호 [REDACTED]
	주소 (소재지)	[REDACTED]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신 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1. 이름이 사자나 있는 자의 실명이나 가나다를 2. 기청에서 송고자와 송고대상 자의 관계에 관하여 받은 것은 본인에 대한 실명 실명이다 3. 기청의 송고대상 자의 가 등하번호 숫자	
	정보 내용	1. 이름이 사자나 있는 자의 실명이나 가나다를 2. 기청에서 송고자와 송고대상 자의 관계에 관하여 받은 것은 본인에 대한 실명 실명이다 3. 기청의 송고대상 자의 가 등하번호 숫자	
	사 용 목 적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 <input type="checkbox"/> 사업관련 <input type="checkbox"/> 행정감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송관련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 개 방 법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문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type="checkbox"/> 복제문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갑 제 / 호 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999년 4월 16일

청구인 **음 영 천**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접수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정보공개에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9013-12111 인
97.5.28. 승인

210mm x 277 mm
일반용서 007/98

위 사 본 합
법 효 사 하 승 수

우편130-740/서울 시초구 서초동 1724번지/전화530-4544/전송530-4555/담당부서 총무과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총무 12130-810

수신 음영친 귀하

접수 일자	1999. 4. 19.	접수 번호	99 - 3
청구정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우리청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의 내용 - 우리청에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근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 우리청의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 		
공개 내용			
비공개 (신부 또는 일부)사유	별첨		
공개 방법	직접공개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우송공개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 일시		공개 장소	
수수료 (A)	우편요금 (B)	수수료감면액 (C)	계(A+B-C)
원	원	원	원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9년 4월 2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지방검찰청 검사</p>			

감제고호중



비 공개 사유

○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범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재범의 방지를 목적으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하여 대의비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 정보는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동조 제1항 제3호),
-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동조 제1항 제4호)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지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본함

2004. 5. 11. 10:10:29

서울지방법원

1999. 6. 10. 판결선고	인
1999. 6. 10. 원본영수	

판 결

사 건 99가소31010 손해배상(기)
 원 고 윤 영 천

장제 4호증

피 고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하 승 수
 대 한 민 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상 천
 소송수행자 임 수 광

변 문 종 결 1999. 6.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21.부 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금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 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의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1999.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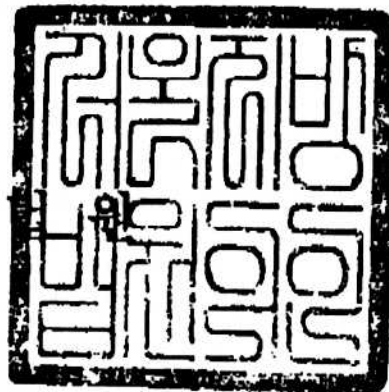
판 사 김 중 필



정 본 입 니 다.

1999. 5. 18

서 울 지 방



법원주사

김 호



위 사 분 함
민 호 사 하 송 순

민소 151 ②

2 139

서울 행정 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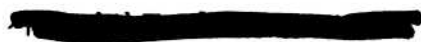
2000. 1. 14. 판결선	인
2000. 1. 14. 원본영	

제 4 부

판 결

사 건 99구212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음 영 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이 상 훈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장 조희래, 박용경

변 론 종 결 1999. 11. 26.

주 문 1. 피고가 1999. 4. 24. 원고에 대하여 변지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999. 4.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신청.

나. 피고: 같은 날 24. 이를 거부하는 회신통지(이 사건 거부처분).

<거부사유> : 다른 법규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고, 공개된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87. 3. 22.부터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그 지침에서는 시국, 공안사범들을 A, B, C, D 등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관할경찰서에 공안사범들의 소재의 동향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그 보고를 받아 왔으며, 위 지침은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안관찰제도로 바뀐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1999. 9. 10. 폐지되었다.

(2) 원고는 1985. 6. 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같은 달 29.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피고는 그 이후부터 위 지침

에 기하여 원고를 동향파악 대상자로 분류한 후, 1997. 3. 31. 관할경찰서인 종암경찰서에 '공안사범출소자 동향파악'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좌경의식 정도, 문제단체에 가입 활동여부, 학원소요 등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기타 재범 또는 반순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전출시 전출근거'등을 같은 해 4. 26. 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종암경찰서장으로부터 같은 해 5. 2. 원고의 재산상황, 직장,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관계, 위 지시사항에 대한 자세한 조사내용을 보고 받는 등 같은 해 12. 경까지 이러한 동향파악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정보공개에 원칙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 및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서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
서 구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피고가 직무상 마련한 지침과 그와 관련하
여 시행된 사항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법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
고로서는 법이 규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비공개사유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가 내세우는 비공개사유에 대한 판단

(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
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에 준하여 대외비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SECRET

②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에서는,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에서는 위 비밀에 관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 내지 지침이 위 보안업무규정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구 사회안전법(1975. 7. 16. 법률 제2769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및 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개정되었다가, 1989. 6. 16. 법관 제4132호 사회보호법으로 대체되기 전의 법) 제3조에서 보안처분의 종류로서 보호관찰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 등 3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경찰서장이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10조에서는 검사는 보안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 등



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동법 제2조에서는 보안처분 대상자를 국가보안법, 형법 등 특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새로 제정된 사회보호법에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지침은 법률의 근거도 없이 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적합한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안업무규정에 기하여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위 보안업무규정 자체에서도 누구든지 행정상의 파로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 참조)

(나) 법 제7조 제1항 제3, 4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범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재범의 방지를 목적으로 범죄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검찰의 고유 업무 중의 하나인 공안사범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이라는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법 제7조 제1



항 제4호, 제3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② 먼저 이 사건 지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1999. 9. 10. 이미 폐지되어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범죄예방목적 또는 다른 수사목적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위 지침에 기초하여 작성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동향파악자료나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 역시 적법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원고 자신에 관한 것이거나 전체 숫자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범죄예방 등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주장

① 피고는, 법 제4조 제3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된 '공안사범'이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미치는 일체의 범죄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를 관장하는 기관인 검찰에서 이리



한 공안사범에 대하여 동향을 파악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어느 정보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 관련이 있어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데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상호이익을 비교衡量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따른 공익상의 필요나 이익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4조 제3항과 별도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란 별도의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어느 정보를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두고자 하는 국



가기관으로서는 그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기하여 수집된 것이고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것인지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지침이 법에 직범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그 지침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시위 전력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동향파악자료나 위 지침에 따른 전체 동향파악 대상자의 등급별 숫자 및 이미 폐기된 위 지침의 내용이 어떻게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보 또는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 4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10.

2000. 1. 14.

재판장 판사 임승순 _____

판사 이재구 _____

판사 김도형 _____

02000
- 10 -

정보공개청구 목록

1. 1987. 이후 실시하고 있는 피고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의 내용
2. 피고청에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근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3. 피고청의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 -끝-



정 본 입 니 다.

2000. 01. 4

2000. 01. 14

2000. 01. 14

서 울 행 정 법 원



법원사무관 노 재 옥



항 소 이 유 서

원고(피항소인) 음영천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 귀중

소송수행자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1724번지 서울지방검찰청	전화	530-4662
----------	-----------------------------	----	----------

4. 한편, 이 사건 지침은 원심에서 석명한 바와 같이 1999. 9. 10.
『폐지』됨과 아울러 『즉시 과기』되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침을 원심
판결 이전인 1999. 9. 10.이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할 것입니다.

2000. 3.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자 검사 김진원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 귀중

2000. 4. 26

준비서면

사 건 2000누1562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음 영 천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공개를 요구하는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은 1987. 3. 20.부터 시행된 것으로 문서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1999. 9. 10.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폐지 시달" 공문에 의하여 1999. 9. 10.자로 폐지됨과 아울러 "즉시 파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입니다.

즉, 위 시달 공문에 의하면 "99. 9. 10.자로 폐지하므로 각급청은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및 「학원사범사후관리지침」공문을 즉시 파기」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당청에서는 위 시달 공문 지시에 의거 즉시 파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



서울지방경찰청
(530 - 4625)

1997 영부 540호

1997. 3. 31.

수신 중앙경찰서

발신 서울지방경찰청
검사 이영훈

제목 공안사범 출소자 등항파악

아래 사람에 대한 이연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결과를 회답할 것

인적사항	성명	음영천	주민등록번호	[REDACTED]
	별칭	[REDACTED]		
주거	주거	저문당시주거		
	주소	[REDACTED]	전화	[REDACTED]
학력	과거	건국대 전자공학과		
	현재	우성종합토건(주)	전화	
직명	전최임시위에관한법률학박사			
출처관서	영등포경찰서 (87. [REDACTED])			
조사사항	<p>4. 26.한 공안2과로 보고하기 바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의식 불지양도 무절단죄에 가담 함등여부 학원소요 등 사회복귀를 야기할 부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타 정본 또는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전출시 전출증거 일부. 관서관에는 00 영합자장(직인) * 회담할시 관서장 및 인민 : 사명권명사 : 관서 000 영합자장 			

감제 호증

1997년 3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검사 이영훈

중 앙 검 찰 서
(925 - 0113)

문 류 기 구 및
문 류 기 구
수 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 97 . 5 2
발 신 중 앙 검 찰 서 장

제 목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조사 보고, 사범경찰관
아래와 같이 회답합니다.

가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가	친척	[REDACTED]	박 정 숙			
가	친척	[REDACTED]	김 태 식			
고	학 령					
학	건국대 전자공학과 중			종	무	
재	월급 2,000만 원 동산			무	월 수	80만원
직	우성종합트건 (주)			전화번호	직 장 0343-47-8672 가 장 983-3496	
장	소					
장 당 및 사 회 단 체 가 입 관 계						
가	입 일 자			비 당 없 음		
단				체 명		
사				퇴 일 자		
				사 퇴 이 유		
조	사					
사	합					
사	1. 과 경 의 식 조 지 정 도 : 대 학 시 절 어 린 마 음 에 손 간 의 과 오 로					
합	잠 못 을 누 우 지 고 과 점 과 직 장 에 만 충 실 하 고, 있 음.					
	2. 문 제 단 체 가 입 활 동 여 부 : 해 당 사 실 받 겠 지 못 함.					
	3. 학 원 소 요 등 사 회 혼 만 야 기 여 부 : 직 장 과 가 정 에 만 충 실 하 고					
	있 어 불 손 언 등 사 항 기 타 목 이 사 항 말 겠 지 못 하 였 음					
	4. 기 타 : 대 상 자 는 95. 11 (주) 참 전 선 에 서 95. 10. 30 일					
	우 성 중 합 트 건 (주) 으 로 봉 급 등 대 우 가 등 아 직 장 이 전 후 에 본 재					
	경 기 도 안 양 소 재 우 성 중 합 트 건 안 양 공 사 현 장 에 서 직 장 에 충 실 하					
	고 이 는 등 특 이 보 제 동 향 발 겠 지 못 하, 였 음.					

감 제 5 호 중 2

우 성 중 합 트 건

징 계 청 원 서

청원인 : 1. 음영천
2. 참여연대

징계대상자 : 1.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대해 파기지시를 한 대검찰청
관련자
2. 위 지침을 파기한 서울지방검찰청 관련자

법무부 장관 귀중

징계청원서

청원인 : 1. 음영천

[Redacted Name]

2.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외3 안국빌딩 신관 3층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

(담당 : 박원석 시민권리부장, 전화번호 : 723-5303, FAX : 723-5055)

징계대상자 : 1.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대해 파기지시를 한 대위찰청
관련자

2. 위 지침을 파기한 서울지방검찰청 관련자

청원인은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에 의거하여, 헌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위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

1. 검찰의 청원인 음영천에 대한 동향파악 사건 개요

•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청원인 음영천은 시위에 참여했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정원인 음영천에 대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는 2달에 1번 꼴로 동향파악을 하여 검찰에 보고해 옴. 이같은 동향파악행위는 1998년경까지 계속됨.

· 1999. 2. 정원인 음영천은 지난 10년간의 불법적인 동향파악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1999. 3. 국가배상청구사건 기각 결정(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

· 기각 결정서를 통해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한 동향파악 사실 확인

· 1999. 4. 1 참여연대 진상조사 촉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대검 공안부 당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동향파악 지침 및 동향파악 사실 시인

· 1999. 4. 16 서울지검에 동향파악 지침의 내용,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숫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1999. 4. 24 서울지검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대외비 문서

- 공개될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 범죄예방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 비공개 사유 제시

· 1999. 6. 11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승소(위자료 200만원 지급판결)

· 1999. 7. 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제기(서울행정법원)

· 2000.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 "비공개 대상정보 아니다"는 판결

· 2000. 3. 18 검찰측 항소이유서를 통해 동향파악 지침 폐지 및 파기 언급

· 2000. 4. 25 검찰측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의 '공안사범 사후관리지침 폐지 시달 공문'에 의한 동향파악 지침 파기 확인

2. 사찰활동 및 문서파기의 위법·부당성

가. 검찰은 1987년 이후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민에 대한

사찰활동을 해 왔습니다. 즉 대검찰청은 1987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시민에 대한 사찰활동을 해 온 것입니다. 위 지침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법 위반 등의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A~D급으로 나누어 동향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음영천씨의 경우에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 단 1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인데도, 무려 10년 이상 불법적인 사찰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이같은 불법적인 시민사찰에 대해 음영천씨는 국가배상청구를 거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은 그같은 사찰활동이 위법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음영천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나. 아울러 음영천씨는 국가배상청구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찰이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지침의 내용과 자신에 대한 사찰카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음영천씨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1월 14일 음영천씨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은 민사소송과 정보공개소송 모두 항소하였고, 정보공개소송 항소심에서 갑자기 위 지침을 파기하였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파기는 대검찰청이 전국의 각급검찰청에 내린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관련 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것은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행위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국법질서의 근간

을 뒤흔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재판소가 여러차례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정보를 공개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공문서 관리를 체계화하고 문서의 임의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말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징계대상자들이 문서파기 시점을 위 법 시행이 전인 1999년 9월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위와 같은 법률이 시행예정인 것을 알면서도 공문서를 임의파기한 것은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검찰이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진실을 은폐한 행위의 반역사성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후에 여러차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것임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해 온 위와 같은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공무원,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검찰공무원이 '과거 진상규명'과 '인권존중'이라는 국가의 기본시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과거의 인권침해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과거 정부부터 시작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히 그와 같은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검찰과 같은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과거 정권부터 이어져 온 기본권 침해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4. 결 론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공무원이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증 거 서 류

1.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문(99가소31010)
1.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99구21291)
2. 서울지방검찰청의 2000. 3. 18.자 항소이유서
3. 서울지방검찰청의 2000. 4. 25.자 준비서면

2000. 5.

청원인 1. 음 영 천

2. 참여연대

공통대표 김중배, 박상중, 박은정

법무부 장관 귀중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중·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175-3 인국빌딩신린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한반도호텔·나우리 PSPD 유·팩: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참연-00-501
수 신 김대중 대통령님
함 조 청와대 민정수석실
발 신 참여연대(담당: 박원석 시민권리부장 723-5303, right@pspd.org)
제 목 검찰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증거문서 파기 진상조사 요청
날 짜 2000. 5. 2. (총 쪽)

진상조사 요청서

- 검찰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증거문서파기 진상조사 요청 -

1. 국리복민을 위한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중·박은정)는 검찰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증거문서 파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3. 엄정한 조사와 처리를 바랍니다.

.....다 음.....

1. 검찰의 민간인 동향파악 사건 개요.

-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유영천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인 유영천에 대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는 2

달에 1번꼴로 동향파악을 하여 검찰에 보고해 옴. 이같은 동향파악행위는 1998년 경까지 계속됨.

- 1999. 2. 청원인 음영천은 지난 10년간의 불법적인 동향파악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1999. 3. 국가배상청구사건 기각 결정(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
 - *기각 결정서를 통해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한 동향파악 사실 확인
- 1999. 4. 1 참여연대 진상조사 촉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대검 공안부 당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동향파악 지침 및 동향파악 사실 시인
- 1999. 4. 16 서울지검에 동향파악 지침의 내용,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숫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1999. 4. 24 서울지검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대외비 문서
 - 공개될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 범죄예방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 비공개 사유 제시
- 1999. 6. 11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승소(위자료 200만원 지급판결)
- 1999. 7. 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제기(서울행정법원)
- 2000.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 "비공개 대상정보 아니다"는 판결
- 2000. 3. 18 검찰측 항소이유서를 통해 동향파악 지침 폐지 및 파기 언급
- 2000. 4. 25 검찰측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의 '공안사범 사후관리지침 폐지 시달 공문'에 의한 동향파악 지침 파기 확인

2. 사찰활동 및 문서파기의 위법·부당성

김찰은 1987년 이후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민에 대한 사찰활동을 해 왔습니다. 즉 내검찰청은 1987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시민에 대한 사찰활동을 해 온 것입니다. 위 지침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법 위반 등의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A~D급으로 나누어 동향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유영천씨의 경우에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 단 1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인데도, 무려 10년 이상 불법적인 사찰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이 같은 불법적인 시민사찰에 대해 유영천씨는 국가배상청구를 거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은 그같은 사찰활동이 위법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유영천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울러 유영천씨는 국가배상청구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찰이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지침의 내용과 자신에 대한 사찰카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유영천씨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1월 14일 유영천씨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은 민사소송과 정보공개소송 모두 항소하였고, 정보공개소송 항소심에서 갑자기 위 지침을 파기하였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파기는 태검찰청이 전국의 각급검찰청에 내린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관련 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것은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정년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행위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국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재판소가 여러차례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기 국민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 5조 제1항은 '정보를 공개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는 것'

공공기관의 의무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공문서 관리를 체계화하고 문서의 임의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 말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징계대상자들이 문서파기 시점을 위 범 시행이전인 1999년 9월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위와 같은 법률이 시행예정인 것을 알면서도 공문서를 임의파기한 것은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검찰이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진실을 은폐한 행위의 반역사성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후에 여러차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것임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해 온 위와 같은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기기관의 공무원,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검찰공무원이 '과거 진상규명'과 '인권존중'이라는 국가의 기본시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과거의 인권침해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과거 정부부터 시작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히 그와 같은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검찰과 같은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과거 정권부터 이어져 온 기본권 침해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4. 결 론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공무원이 스스로 법질

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별첨서류

1.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문(99가소31010)
2.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99구21291)
3. 서울지방검찰청의 2000. 3. 18.자 항소이유서
4. 서울지방검찰청의 2000. 4. 25.자 준비서면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인권하루소식

1999년 04월 02일 (금)
제 13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집시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한 시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경찰의 사찰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 체포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음영천 씨는 90년경부터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찰에 의해 동향을 조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직업과 직장명, 출퇴근시간, 자주 만나는 사람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음 씨가 집에 없을 경우엔 어머니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동태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97년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에는 집 근처 다방에서 음 씨에게 일정한 양식이 적힌 종이를 주면서 양식대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찰행위로 인해 음 씨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안고 살아왔으며, 특히 선거 시기의 동태파악은 선거권 행사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음 씨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며, 소송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드러나게 됐다.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올 3월 음 씨에게 보내는 배상결정통지서에서 "서울 중앙경찰서 보안과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 동향을 파악□보고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사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경찰의 동향 파악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금전으로 배상받아야 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일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음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검찰의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민간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지금도 어디서 누가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검의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의 경위와 배경,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및 징계를 요청하며, 1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목록으로>

인권하루소식

1999년 06월 12일 (토)
제 13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경찰은 90년부터 97년 말까지 음씨의 집을 찾거나 전화를 거는 등 음씨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며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씨가 배상을 받아야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었다. 이에 음씨는 지난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씨의 청구소송을 도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같은 동향파악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동향파악대상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정보사찰 의혹

한편,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사찰이 진행되어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용산경찰서 정보과 이병목 형사는 인권단체사무실을 알선한 조부동산(한강로1가) 엄아무개 씨를 찾아가 임대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 물어 볼 것이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사찰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회장 이해숙 □전군협)와 새 인권단체를 준비중인 오창익(전 천주교인 권위원회 사무국장) 씨 등이 함께 쓸 사무실을 구하려 다니자 이 형사는 부동산으로 찾아와 전군협과 오 씨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고상만(전 천주교인권위원회)씨가 이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찰의혹'을 제기하자 이 형사는 엄씨와의 만남을 부인하다가 엄 씨에게 건넨 명함을 근거로 추궁하자 "만남 사실은 있지만, 경찰서로 '오라 가라' 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고 씨는 "인권단체의 사무실을 알선한 부동산업자를 협박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며 국민의 정부에 사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목록으로>

인권하루소식

2000년 05월 03일 (수)
제 16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한 시민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과거 시위 전력 때문에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10년동안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39, 서울 서초구) 씨와 함께 지난해 7월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정보는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의 내용 ▷음 씨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 등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9월 이들 공개대상 문서를 모두 파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1심에서 패소한 후에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은 이 '지침'이 "99. 9. 10자로 폐지됨과 아울러 '즉시 파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이며 따라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날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진상조사 요청서' 및 '징계청원서'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거 진상규명'과 '인권 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시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광희 변호사는 이를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이 문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관용 문서 및 관련 정보는 존재할 것"이므로 이 자료라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음씨는 지난해 초 '경찰에 의해 지난 10년 동안 불법사찰을 당해왔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의혹이 높아지자 검찰은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음 씨의 동향을 파악해온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에 음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곧 이어 음 씨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검찰이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유해정]

<목록으로>